

심사보고서

○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3
----------	-----

2015. 12. 15.(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윤 홍 창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5년 11월 23일

다. 회부일자: 2015년 11월 24일

라. 상정일자: 2015년 12월 04일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윤홍창 의원)

가. 제안이유

참여와 개방·공유를 목표로 충청북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언론’ 및 ‘언론사’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2)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3) 언론을 통하여 시행하는 소통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4) 준용 규정 명시(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반기환)

- 본 제정조례안은 충북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구성원 간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언론을 통하여 시행하는 소통 활성화 사업의 내용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제정을 통하여 언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지출 근거가 좀 더 명확히 이루어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성이 강화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3. “지방보조금”이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교부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북교육 구성원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교육감은 충북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언론사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북교육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언론 캠페인
2. 언론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 행사
3. 언론을 통한 교육특강 및 학술·문화·예술·체육 행사
4. 언론을 통한 독서·토론·미디어·진로·현장체험 교육
5. 언론을 통한 교육 정보 제공

6. 그 밖에 교육감이 언론을 통한 충북교육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언론사는 2년 이상 해당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준용)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충북교육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언론 캠페인
- 언론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 행사
- 언론을 교육특강 및 학술·문화·예술·체육 행사
- 언론을 통한 독서·토론·미디어·진로·현장체험
- 언론을 통한 교육 정보 제공
- 교육감이 언론을 통한 충북교육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관련 조문

- 제4조 보조금 지원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언론을 통한 교육·학예 사업 지원	250,800	250,800	250,800	250,800	250,800	보조금 지원
계	250,800	250,800	250,800	250,800	250,800	

나.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홍창 의원
연락처	043-220-5079

5. 2016년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전 체		
	계	국비	지방비
계	250,800	-	250,800
언론을 통한 교육·학예 사업 지원	250,800	-	250,800